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62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2-3396-5453,
팩스: 02-3396-8754, email: chldudddk77@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보행, 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행사,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등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 나.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마.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